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31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전용기 · 김우영 · 양부남
윤준병 · 장철민 · 허성무
송기현 · 김영진 · 김 윤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¹⁾으로 위원회의 진정 기각, 각하 결정의 처분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안내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정인 등이 처리결과 통지문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진정인 권리구제 보장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시송달 기준 신설 검토가 필요함.

1) 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 등

또한 우편으로 보낸 처리결과 통지서가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통지를 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5를 신설하여 진정 처리결과 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제49조의6을 신설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진정사건 처리결과 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5(진정 처리결과의 송달) 위원회는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공시송달) ① 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9조의5(진정 처리결과의 송달) 위원회는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9조의6(공시송달) ① 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u> <u>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u> <u>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u> <u>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u> <u>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 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	--